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에서 공시사항으로 규정한 횡령·배임 혐의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25)이상인 금액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3)이상인 금액
3.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10 이상인 금액”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횡령·배임 혐의금액의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고소·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지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산정 및 적용) ① (생략)</p> <p>② 영 제4조제9항제4호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에서 공시사항으로 규정한 횡령·배임 혐의 금액으로 한다.</p>	<p>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산정 및 적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다 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25) 이상인 금액</p> <p>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 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3)이상인 금액</p> <p>3.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5(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25) 이상, 직원은 당해 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10 이상인 금액</p>